

의안번호	제 423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6년 6월 29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 29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2016. 9. 1.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: 3,150명 → 3,135명(△15명)

나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
정원 조정(안 제2조): 2,907명 → 2,892명(△15명)

3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6. 3. ~ 6. 23.)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150명”을 “3,13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907명”을 “2,892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35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2,883	-			
3급	5		5		
4급	19	1	17	1	
5급 이하 소계	2,846	-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
연구직 계	12	-			
연구사 소계	12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36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	23	11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-			
별정직 계	3	-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3,150명</u>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3,135명</u>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07명</u> (제 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	2. ----- ----- <u>2,892명</u> -----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	[별표 3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	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제4조 관련)	(제4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기관별 직급별</th><th>총계</th><th>도의회 사무처</th><th>본청 (부속기관)</th><th>교육지원청 (부속기관)</th><th>공립 각급학교</th></tr><tr><td>총계</td><td>3,150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정무직 계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교육감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2,898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3급</td><td>5</td><td></td><td>5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19</td><td>1</td><td>17</td><td>1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 이하 소계</td><td>2,861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<td>13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연구직 계</td><td>12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연구사 소계</td><td>12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<td>236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<td>34</td><td></td><td>23</td><td>11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<td>202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별정직 계</td><td>3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5급 상당 이하 소계</td><td>3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부속기관)	교육지원청 (부속기관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50	-				정무직 계	1		1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2,898	-				3급	5		5			4급	19	1	17	1		5급 이하 소계	2,861	-				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	연구직 계	12	-				연구사 소계	12	-				교육전문직원 계	236	-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	23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-				별정직 계	3	-				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	<table><tr><th>기관별 직급별</th><th>총계</th><th>도의회 사무처</th><th>본청 (부속기관)</th><th>교육지원청 (부속기관)</th><th>공립 각급학교</th></tr><tr><td>총계</td><td>3,135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정무직 계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교육감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2,883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3급</td><td>5</td><td></td><td>5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19</td><td>1</td><td>17</td><td>1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 이하 소계</td><td>2,846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<td>13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연구직 계</td><td>12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연구사 소계</td><td>12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<td>236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<td>34</td><td></td><td>23</td><td>11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<td>202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별정직 계</td><td>3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tr><td>5급 상당 이하 소계</td><td>3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부속기관)	교육지원청 (부속기관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35	-				정무직 계	1		1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2,883	-				3급	5		5			4급	19	1	17	1		5급 이하 소계	2,846	-				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	연구직 계	12	-				연구사 소계	12	-				교육전문직원 계	236	-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	23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-				별정직 계	3	-				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부속기관)	교육지원청 (부속기관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5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898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5	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	17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2,86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	23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부속기관)	교육지원청 (부속기관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3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88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5	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	17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2,84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4		23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

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